

第208回國會 政治改革立法 特別委員會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日時 1999年11月30日(火)
場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 1. 政治關係法審查經過報告(未合意爭點事項에 관한大體討論)

審查된案件

- 1. 政治關係法審查經過報告(未合意爭點事項에 관한大體討論) 1面

(15시29분 개의)

○委員長 安東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朴出海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安東善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9일에 구성되어 1999년7월16일 활동기한 종료로 인해서 일단 해산되었다가 1999년8월2일 제206회국회 1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다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재구성된 이래 선거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및 정치자금법·정당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등 6차의 전체회의와 19차의 소위원회 등 총 25차의 회의를 열고 정치관계법 심사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상당한 부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 완전 합의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특히 핵심적인 사항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오늘로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각 소위원회별 심사경과보고를 듣고 미합의 핵심쟁점사항에 관하여 위원님들이 진술한 의견을 나누고 또 대체토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간사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전체회의가 개의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1. 政治關係法審查經過報告(未合意爭點事項에 관한大體討論)

(15시32분)

○委員長 安東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관계법심사경과보고를 상정합니다.

○金學元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예.

○金學元委員 방금 위원장님께서 간사들끼리 합의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간사이고 우리 당에서 간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하지 않은 어떤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당의 간사에게는 연락도 없이, 그렇다고 하면 한나라당과 국민의회의 두 당 간사들끼리 합의한 모양인데 이런 의사진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 점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東善 일단 오늘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간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일단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전체회의를 한번 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李相洙 위원에게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3당 간사간에 합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나라당에서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洙委員 국민의회의 李相洙 간사입니다.

제가 그 점에 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쯤 위원장님께서 야당측에서 오늘 오후 3시에 선거법소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다 그래서 간사들끼리 합의해 가지고 그렇게 바꾸도록 하자고 얘기를 해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제가 다른 당 간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金學元 위원한테 연락을 하니까 당에서 회의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카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방금 내려서 의원회관으로 가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회관에 전화하니까 다른 방에 가서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달리 회의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보좌관에게 자세한 사항을 얘기하면서 이리이러한 사항으로 오늘 오후 3시에 모임을 전체회의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만일 이의가 계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다른 말씀이 안 계시면 동의를 한 것으로 알고 오늘 오후 3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전갈을 했는데 그 전갈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모르겠고요.

또 아까 이 회의하기 한 30분 전에 내가 金學元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金學元 위원님이 별로 얘기를 안 하시기에 나는 다 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문제가 되니까 조금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學元委員** 이 위원회를 여는 것이라든지 그 취지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3당 중 한 당의 간사로 있고 간사들끼리 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서 3당 간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두 당 간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간사들이 모이기 적당치 않다면 날짜나 시간을 적절히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화상으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간사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이 직접 소집하시든지 그래야지 간사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두 당 간사가 결정하고 제3당에 통보하는 식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전달은 받지 못했는데 설사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간사회의는 국회에서 관례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챙기시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安東善** 지금 조그마한 부분에 대해서 金學元 위원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회의는 양당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3당 간사가 합의해서 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연락이 수월치 못한 것뿐이지 두 당이 협의해서 하고 통고하는 식의 회의가 전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런 오해가 계시면 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고 그러면 의사일정…….

○**白承弘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예, 말씀하십시오.

○**白承弘委員** 지금 경과보고도 중요하지만 오늘까지 연기가 되어서 시한이 오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선거구제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개혁특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먼저 위원회에서 의견의 일치를 봐서 시한을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 들어가야지 예를 든다면 기우입니다마는 오늘 경과보고를 하고 또 미합의 쟁점사항에 관해서 대체토론까지 의사일정대로 한다고 가상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날치기를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서 하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문제도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합의된 사항도, 이것은 여야가 서로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기 때문에 하는 문제이지만 국민적 관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선거구제문제, 중선거구제나 소선거구제나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하면서 오늘 이와 같이 시간이 다 되어 종료되었다 해가지고 3당간에 합의가 끝내 안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또 국민들 앞에 추태를 보이고 서로 뒤집어씌우거나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날치기라는 역사에 없는 문제점도 제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과보고 이전에 특위의 활동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운영위원회가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당이 모여 있는 정치관계법특위 위원들이라도 의견일치를 해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연장토록 우리가 공식 요청하자 하는 등의 어떤 의견일치를 보고 이 문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申榮國委員 위원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예, 말씀하세요.

○申榮國委員 白承弘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건에 대해서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98년12월9일부터 7월16일까지 그 동안에 활동기간의 연장이 한 다섯 차례 있었고 또 8월12일부터 어제 즉 11월29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일차 있어서 여섯 차례에 걸쳐 특위는 거의 자동연장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거관계법이라든가 정치개혁법이 소위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 역사상 여야 동수인 여야합의로 해왔기 때문에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여러 차례 또 자동연장해왔고 또 최근 얼마 전에는 지금 여야 총무간에 선거관계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야 된다고 재삼 확인한 바가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 정치개혁특위도 그 동안에 전체 회의를 8번 소위원회를 27번 합계 35회에 걸쳐서 때로는 밤 9시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白承弘 위원이 말씀한 대로 오늘 시한만료를 다시 연장해 줄 것을 우리 특위의 이름으로 결의를 해서 국회의장한테라든가 3당 총무한테나 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건부터 우선 처리하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예, 金東周 위원 말씀하세요.

○金東周委員 金東周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들 그리고 소위원들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인 모양인데 연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위에서 합의된 안은 합의된 안대로 또 합의되지 않은 안은 합의되지 않은 안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정하거나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하는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白위원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특위는 3당 총무가 지난번 국회 개원할 때의 합의정신을 살려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특위가 계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는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 아까 조금 전에 申간사가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에게 건의를 하든지 어떤 통로로 하든지 간에 3당 원내총무가 특위활동에 관한 부분에 관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柳宣浩 위원님 말씀하세요.

○柳宣浩委員 여기에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연장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선 우리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탄생하고 싶어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3당의 의사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타율적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위원회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의사를 우리가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들은 그 동안 정치구조개혁특위까지 합해서 1년6개월 가까운 동안 저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노고를 통해서 만든 그나마 근사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의된 안들은 합의된 대로 소관 상임위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또 합의가 안된 것은 다음 16대에 계속해서 이것을 개혁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발표해 주는, 그러한 정리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소관 임무에 맞는 의사진행을 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말씀하세요.

○鄭義和委員 鄭義和 위원입니다.

방금 柳宣浩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뉴스를 보니까 집권당의 한 측에 해당되는 당의 총재께서는 연장이 불가하다는 뉴스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회의에 오니까 또 우리 위원장께서는 대체토론 얘기를 하시고 또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도저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미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미합의된 사항은 현행대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저로서는 연장 불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의 주장대로 국회법에 따라서 연장은 불가하고 나머지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만, 이걸 일견 아주 합법적인 처리인양 보이기는 하지만 선거법에 대한 기본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지하시다시피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반 민생법안과 같이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일에 완전합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선거법을 합의 아니고서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계시다면 시한은 당연히 연장돼야 되고, 오늘이 특위의 시한인 날인데, 이것이 연기되지 않고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면 이것은 곤란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특위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회에 연장을 건의하기로 합의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한 말씀을렸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네, 李相洙 위원님……

○李相洙委員 저로서는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원만한 타협을 해서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우선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합의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효율성을 위해서나 또 그 성질로 봐서 이 법안들이 일반 상위에서 논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가 연장되거나 혹은 연장 안 되면 다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다시 총무들이 모여서 연장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에 3, 4일 후에라도 합의가 되면 다시 특위를 만

들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 당에서는 의견을 모았고요, 한편으로는 효율성을 위해서도 근본문제에 관해서 우리 특위가 논의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위가 만일에 오늘로 끝나고 다시금 재구성될 때까지 총무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합의가 되면 합의되는 즉시 다시 또 특위를 열어서 우리가 그 부문문제를 또 협의할 수 있다라는 전략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오늘 마무리가 지어진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일반 상임위로 돌려서 물리적으로 강행처리 할 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양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총무회담을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東善 邊精一 위원 말씀하세요.

○邊精一委員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은 우리 정치제도개혁특위가 계속 활동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이 없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실 선거 관계법만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67개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또 40여 개 사항이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16대 총선은 정말 국민이 바라는 대로 선거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우리가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들에 대해서 아직 여야간에 합의를 못 본 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정당법 여러 분야에 관해서 대체로 정신적으로는 같이하면서도 각론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서 아직 합의를 못 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논의한다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고 특히 정말로 많은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 그리고 16대 선거에 출마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많은 정치지방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 제도라든지 비례대표제의 문제 등 아주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또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분분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원 정수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는 설사

여야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이 특위 연장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내일이든 모레든 글피든 간에 며칠 지나서라도 정치제도개혁특위는 재탄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사이에 아무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오늘 본회의장에서 安東善 위원장님께서 우리 정치제도개혁특위의 그간의 활동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많이 합의했지만 아직도 합의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정치제도개혁특위가 더 존속해서 활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申榮國委員** 아까 柳宣浩 위원 말씀이 우리가 태어나기를 우리 마음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마는 비록 태어나기는 우리 뜻대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가 안 태어난 것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邊精一 위원 말씀따라 우리가 오늘 모처럼 특위를 열었으니까 24명의 특위위원들 생각은 우리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가 결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건의를 결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죽고 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柳宣浩 위원님 말씀 그런 오해를 안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국회의장이라든지 3당 총무라든지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데에 정치개혁특위 24명은 할 일이 남았고 또 우리는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결의해서 본회의가 열리면 安東善 위원장님께서 그 뜻을 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東周委員**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당 입장으로서 지난번에 3당 총무가 어렵게 국회를 정상화시킬 때 여러 가지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총무회담에서 앞으로 정치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李相洙委員** 申榮國 간사님의 말씀도 저는 일리

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뜻을 다지는 입장은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민련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 말 화기에애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자민련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그런 뜻이 있다면 오늘 회의의 분위기를 위원장께서 총무단에 알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東周委員**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白承弘委員** 일단 정회해서 3당 간사들이 국회의장과 3당 총무한테 우리의 뜻을 통보해 주고 그 다음에 방법을 세워야지요.

○**鄭義和委員**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 특위가 수 차례에 걸쳐서 시한을 연장해 왔는데 방금 邊精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것을 결심해 주신 다음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安東善** 가만히 계세요. 일단 정회를 하고 지금 그 말씀은 3당 총무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추후에 우리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종합하겠습니다.

○**白承弘委員** 위원장님, 3당 총무회담 결과를 보고 그 결정에 따르자는 그 부분의 문제는…… 실제로 한번 봅시다. 오늘 국회를 2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당 총무회담에 정치개혁특위 시한문제가 제일 쟁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한다 그래 가지고 총무회담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특위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된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결의권이 없고 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민련의 존경하는 金東周 위원께서도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맞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회를 하는 수순이 위원장님과 3당 간사께서…… 국민회의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위위원들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 공감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3당 총무에게 또 국회의장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

한다 이렇게 수순을 밟기 위해 지금 정회가 필요한 것이지 그냥 정회해 놓고 3당 총무가 하는 대로 본다 하면 국회도 파행이 오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薛勳委員 비슷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어차피 국회 의사라는 것이 총무회담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회합시다.

○委員長 安東善 여러분들,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셨으니까 일단 정회하는 것으로……

○白承弘委員 그러면 위원장님이 뜻을 전달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좀 해야지요.

○鄭義和委員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거기에서 결의가 안 되면 우리 특위는 오늘 이 회의로서 끝나는 것인가요? 李相洙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재구성할 때까지는 안 되는 것인가요?

○委員長 安東善 지금 다시 재구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총무회담을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出席委員

安東善 申榮國 權五乙 金榮珍
朴柱千 遑精一 李揆澤 白承弘
李源馥 鄭義和 李相洙 朴光泰
薛勳 柳宣浩 千正培 金學元
金東周 金宗鎬 許南薰

○出席專門委員

首席專門委員 朴奉國
專門委員 俞炳坤
專門委員 安秉玉
專門委員 林仁圭

【報告事項】

○特別委員辭任및補任

委員會	辭任委員	補任委員	交涉團體
政治改革 立法特別	李相培	白承弘	한나라당

(11월11일자)

○議案回附

公職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中改正法律案(朴相千·李肯珪·林采正·車秀明·李相洙·金學元·朴光泰·新南薰·宋勳錫議員外 140人 發議)

11월10일 회부됨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鄭鎬宣議員外 21人 發議)

11월24일 회부됨